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6 196-1

2023. 8.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및 8. 21. 구청장(교통행정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심사보류 ”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30.)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부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1) 구체적인 수탁 관리·감독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2) 다둥이카드 소지자(2자녀)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하며, 3)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스마트공유주차 일일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 불법사용을 근절함으로써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추진함.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부재에 대해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제 마련(근거, 방법, 점검항목, 제재 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2023. 3. 27.)에 따라 다둥이카드 소지자(2자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1] 제17호)

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불법사용 요금을 3급지 주차요금에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스마트공유주차 일일요금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높여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의제2항제1호 및 [별표1의2] 제8호제나목)

라. 조항정비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 총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 2023.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요청사항’과 2023년 3월 개정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및 2019년 12월 신설된「주차장법」상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 사항 검토

가. 수탁기관 관리·감독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 현행 조례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가 없는 관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이에 따라 ① 관리·감독상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 사무실 출입권한 ② 주차장 관리 운영 관련된 장부·서류 등 조사권한 ③ 위탁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행정명령권 ④ 관리수탁자의 위탁관리 현황 (구청장) 보고의무를 명시하였음.(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만 출입 권한과 조사 권한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증표 지참 의무를 부가하였음.(안 제10조의2제3항)

○ 관리수탁자가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 불이행 및 관리현황 보고 거부 또는 허위 보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0조의3)

○ 위 개정 사항은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투명한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국민권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수용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나. 주택가 도로 주차장 주차 요금 체계 변경(별표 1의2 8호 나목과 안 제6조제2항)

1) 스마트 공유주차제 주차요금 조정(별표 1의2)

현 행	개 정안
〔별표 1의2〕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4조 관련)	〔별표 1의2〕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4조 관련)
8. 1+1 사업 외에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방문차량(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8.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스마트 공유주차제(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앱에 공유주차구획을 등록하고 방문차량이 그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u>5000원</u>으로 한다.	나. ---------- <u>7,200원</u>----------.

○ 위 개정안은 스마트 공유주차제[1]의 현행 일일 최대 주차 요금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인 바, 현행 조례제14조제2항[2]에 따라 주

1) 스마트 공유주차제: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앱에 공유주차구획을 등록하고 방문차량이 그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별표 1의2 8호나목)

2) 조례 제14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등)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감면 또는 적립식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u>

택가 도로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 공유주차의 경우에는 30분마다 9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지만 일일 최대 5천원에 그치는 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요금 탓에 장기주차 방법으로 퇴색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최대요금을 기존 5천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임.

2)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변경**(안 제6조제2항)

현 행	개정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 ----------.
1. <u>주차카드 및 주차시간</u>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u>주차요금</u>을 부과한다.	1. <u>주차시간</u>----------. ---------- <u>주차요금 및 가산금</u>을 --.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의 주차방법, 주차시간, 주차장 설치, 주차장 공유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 조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일일 최대 주차요금 부과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개정안은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자의 주차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해당 주차금액의 4배)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검토하건데 스마트 공유주차제와 거주우선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저렴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패널티가 낮은 이유로 인하여 무분별한 장기 주차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차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다. 다둥이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별표 1)

현 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17. ---------- 주차요금의 ----------.

○ 2023년 3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와 제4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다자녀가족’으로 정의하고, 이들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집행부는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종전 3자녀 가족에서 2자녀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위와 같이 제출하였음.

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안 제4조의)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 "수급실태조사" ----------.
<신 설>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가)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의무 실시**(안 제4조의2제1호)

○ 주차장법 체계에서는 주차장의 안전을 포함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맡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한 노외주차장에 대

3)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하여 그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시민 안전 증진 방향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의무화된 바, 금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나) 경사진 주자창 내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안 제4조의2제2호)

○ 경사진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제6조제3항이 2019년 12월 개정된 바,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질의과정 중, 제출된 조례안에 양식 상의 착오가 있었으며 집행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의회 제출 문서와 자료에의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심사보류 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어 심사보류됨.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30.)

○ 질 의 :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 상황이 많이 열악한데, 주차장 확충 등 집행부에서의 대응 복안은 어떤 게 있나

○ 답 변 :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임.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할 때, 추가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도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 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상충되는 주민 의견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의 안 번 호	196-1

제출년월일 : 2023. 8. 2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교통행정과

1. 제안이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부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1) 구체적인 수탁 관리·감독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2) 다둥이카드 소지자(2자녀)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하며, 3)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스마트공유주차 일일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 불법사용을 근절함으로써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추진함.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부재에 대해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제 마련(근거, 방법, 점검항목, 제재 등)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2023. 3. 27.)에 따라 다둥이카드 소지자(2자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안 [별표1] 제17호)

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불법사용 요금을 3급지 주차요금에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스마트공유주차 일일요금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높여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의제2항제1호 및 [별표1의2] 제8호제나목)

라. 조항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 총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 2023.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을 “주차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차요금을”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제10조의4 및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1일 주차, 월정기”를 “월정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1일 주차권ㆍ월”을 “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구획 5분	월정기권		1구획 5분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150,000	3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20,000	25,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2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15,000	1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25,000	15,000	50	25,000	15,000

※ 위 주차요금은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 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 급지 :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도산대로· 삼성로· 봉은사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도곡동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
   나. 2 급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 급지 : 1· 2· 4· 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 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 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 2· 3· 4급지 주차장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구청장이 운영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노외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7.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제14조 관련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단서 삭제 2016.5.4.>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개정 2020.6.5.>

다. 「노인복지법」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10.03.12.>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20. 6.5.>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20. 6.5.>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0.6.5.>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예우대상자 가족일 경우에 한한다)를 제시한 사람

9.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 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구청장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06>

1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3. 주차요금의 할인· 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0. 3. 3>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00.

3. 3> <단서삭제 2020.6.5.>

16.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강남구 선거인에게는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08.04.04>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18. 동 문화센터 및 학교복합화 시설의 공영주차장은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서 구청장은 이들 공공시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가목은 최초 90분(연속 강습 고객 차량은 최초 150분), 나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차량은 최초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1.07.29> <개정 2012.5.23., 2019.4.5.>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 차량

나. 공공시설 방문(민원) 차량

다. 공공시설 내 시설공사, 운영장비 A/S,물품납품 차량

라. 각종 회의 참석차량

마. 언론기관 취재활동 차량

바. 공공시설 내 입주한 기관 및 유관단체 임직원(지도강사, 공무원 포함)차량

19. 긴급차량, 공무수행(관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 학교복합화사업 협약에 따른 교직원 무상배정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은 행사 주관자가, 학교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은 협약에 따른 교직원 차량에 대하여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자가 사전 승인한 차량으로 해당 일자 및 시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1.07.29>

20.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5분당 5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16.03.11.>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17.8.4.>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0.6.5.>

2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과 감면 내용은 제18호 가목을 따른다.

[별표 1의2]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제14조 관련)

(요금 기준 : 월 단위)

구분	전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간(08:30~19:00)				야간 (19:00~익일 08:30)	
		4시간 이상 제공		8시간 이상 제공			
		주 사용자	공유자	주 사용자	공유자	주 사용자	공유자
거주자	50,000원	35,000원	15,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업무자	100,000원	70,000원	30,000원	60,000원	40,000원	70,000원	30,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조례 제14조 관련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 또는 야간으로 구분 운영하는 주차구획의 경우 주간은 8시간 이상 주 사용자 요금, 야간은 공유자 요금을 준용한다.
3.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제1항 [별표 1] [비고] 제8호, 제10호, 제17호 할인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이하 “1+1 사업”이라 한다)이란 비어 있는 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웃 주민과 공동사용 협약체결 후 차량 1대를 추가 등록하여 함께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 사용자”란 1+1 사업 참여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일제 사용자를 말한다.
6. “공유자”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중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어 있는 시간대 주차 구획을 함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1+1 사업의 공유시간은 평일 사용(일요일·공휴일 제외)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 협약에 따

라 정한다.

8. 1+1 사업 외에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방문차량(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잠시주차제(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비어있는 시간대에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구획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나. 스마트 공유주차제(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앱에 공유주차구획을 등록하고 방문차량이 그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7,200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 "수급실태조사"----------.
<신 설>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 수급실태조사 ----------

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 ----------.
1. <u>주차카드 및 주차시간</u>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	1. <u>주차시간</u>----------. ----------

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 9. (생 략) ③ (생 략) <신 설>	----------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 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

	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제11조의2 (생 략)	제10조의4·제11조 (현행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음)
제15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5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일 주차, 월정기 주차하는 자동차	4. 월정기 ----------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9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 월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비고]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비고]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구청장이 운영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 노상·노외주차장----------.
7.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제14조 관련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7.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

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10. 구청장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	17. ---------- 주차요금의 ----------.

한다.	
[별표 1의2]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4조 관련)	[별표 1의2]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4조 관련)
8. 1+1 사업 외에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방문차량(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8.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스마트 공유주차제(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 공유주차구획을 등록하고 방문차량이 그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나. ---------- 7,200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변경 안내에 따른 비용이 약 13,080천원으로 추정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안내 표지판 변경비용

▷ 10,800천원 = 54개소×4개×50,000원

· 거주차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변경비용

▷ 2,280천원 = 76개×30,000원

4.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8급 김지민 (02-3423-6403)